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호건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호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5월 14일

발의자 : 김경이, 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
오중균, 이호건, 임태근, 임현주,
정기혁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“24시간 전까지”에 토요일·공휴일 제외(안 제 51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부서협의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4. 5. 17. ~ 2024. 5. 22.

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 중 “24시간 전까지”를 “24시간 전(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구정질문) ① (생 략)	제51조(구정질문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 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 은 늦어도 질문시간 <u>24시간 전</u> <u>까지</u>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24시간 전</u> <u>(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</u> <u>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</u> <u>은 제외한다)까지</u> 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